『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정 2009.12.3 농촌진흥청훈령 제818호 개정 2011.1.10 농촌진흥청훈령 제84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공동연구개발사업(이하 "공동연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연구"라 함은 농촌진흥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 1. 10>
-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 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 10>
-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 10>
-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 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 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 10>
-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 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 10>
- 6.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 10>
- 7.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1. 10>
- 8.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 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 10>
- 9.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연구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1. 1. 10>
- 10.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1. 1. 10>
- 1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신설 2011. 1. 10>
- 1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 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신설 2011. 1. 10>
- 1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신설 2011. 1. 10>
- 1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 10>
- 15. "농업인 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 의 농어업경영체, 제4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과 관련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 1. 10>
- **제3조(대상 사업)** 제2조제1호에 의해 정의된 공동연구로 추진되는 연구사 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 10>

제 2 장 조직설치 및 운영

- **제4조(조직구성)** ①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공동연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 사업별로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 ② 사업단장은 공동연구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심의위원 회, 실무위원회, 연구단, 사업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제5조(수당 등)** 농촌진흥청장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과제 선정·평가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공동연구사업 추진

제6조 삭제 <2011. 1. 10>

제7조 삭제 <2011. 1. 10>

- 제8조(사업계획 수립, 기술수요조사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예산, 농업·농촌·농업생명공학연구정책 방향, 소속 연구기관 및 외부 기관의 공동연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공동연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사업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조사 또는 기획연구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정」 제4조에 근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③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

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④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과제의 발굴·기획·선정·평가를 위하여 과 제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공고 및 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차년도 공동연구를 추진하려면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하여야 하며,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중에 추가로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10>
 - 1.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 ·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거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연구자를 지정하여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7. 연구개발비 명세서

-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 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 ⑤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제10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농촌진홍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 받은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소속 공무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 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제8호와 「농업기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 · 협력 가능성
- 7.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 9.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④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2호의 연구자 및 제3호의 연구기관이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1.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냈거나 보안과제(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였거나 기술이전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 2.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 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 ⑤ 농촌진홍청장은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⑥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 개발과제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이유로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 10>
- ⑦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동연구과제를 신청한 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⑧ 농촌진흥청장은 선정된 공동연구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⑨ 농촌진흥청장은 제7항에 따른 공동연구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 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0>
- 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기준·방법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10>
- 제11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제 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그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농촌진 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에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 10>
- ③ 제1항의 과제중 기업참여과제는 연구계획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현금출자인 경우 : 은행지급보증, 약속어음 등 공동연구주관기관 재무부서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현물출자인 경우 : 출자확인서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연구인력 : 참여기업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2. 연구기자재 : 참여기업이 제공하는 연구기자재의 시가 또는 보유연구 기자재의 사용료
 - 3. 연구시설 : 참여기업이 제공하는 연구시설 또는 활용 연구시설의 설

치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실제경비

- 4. 연구재료 : 참여기업이 제공하는 시약 및 재료의 시가
- ⑤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 서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책 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⑥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공동연구 과제로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⑦ 농촌진흥청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과의 연구협약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공동연구사업 주관연구협약서, 공동연구사업 협동연구협약서, 공동연구사업 위탁연구협약서에 의한다. <개정 2011. 1. 10>
- ⑧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계획 요약서를 발간하여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제8호와 「농업기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분류된 보안과제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보안을 요청한 때에는 목록만 기입하고 내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 10>
- 제12조(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검토·조정기준) ① 제9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거나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조정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소속 연구기관에 재배정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연구비와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등에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② 시험연구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계상 및 검토·조정하여야 한다.
- ③ 출연금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제16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1. 1. 10>

-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연구에 선정된 연구개 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장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1. 1. 10>
- ② 협동연구 협약은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협동연구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연구기관일 때에는 주관연구기관과 협 동연구기관간의 양해각서 또는 협정을 근거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상대국의 연구개발비 운영 및 관리 체제가 이 규정과 상이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한 후 협약을 체 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③ 위탁연구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세부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되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1. 1. 10>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동연구협약서와 위탁연 구협약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의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 구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⑦ 주관연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등 대표권한이 없는 기관의 연구개발 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 인의 대표자와 체결하며 그 대표자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 와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11. 1. 10>
-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1. 농촌진흥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연구목표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 청한 경우
- 3.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 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참여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검토·승인한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 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 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의 결과 농촌진흥청장에 의하여 연구개 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7. 제3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8.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때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 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와 제6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 제66조에 따 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 10>
- **제16조(연구개발비 지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 10>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농촌진흥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내부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별표 1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고, 응용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음 단계의 연구기간 동안 별표 1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보다 줄어든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0>

- ④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일 때에는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연구개발비에서 분리하여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⑤ 농촌진흥청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있다. <개정 2011. 1. 10>
- 제17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비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경우에는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②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용을 증빙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에서 정하여진 당해연도 협약기간의 완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③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는 제16조제5항의 연구개발비 중인건비, 직접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실적·계획서를 말한다)상의 비목별 계상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1. 10>
- ④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이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연구성과의 보호 역량, 연구성과의 활용 역량 등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 10>
-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10>
- 제17조의2(연구관리 우수기관) ① 농촌진흥청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한다.
 - ②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 10]

- 제1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은 협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책임자가 확인한 협동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 단,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는 매 연도마다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예 산집행지침에 따라 시험연구비를 집행하는 연구기관은 자체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약에 의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회계관리 사항 등을 제출받아 정밀검토 하게 할 수 있다.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연구사업기간 완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잔액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부 당집행 분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그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⑥ 주관연구책임자 및 협동연구책임자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비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 10>
- ⑦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10>
- 제19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과제 최종보고서와 그 전자문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1. 10>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
 -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 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5항에 따른 국 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 중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제8호와 「농업기술연구개 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분류된 보안과제의 연구개발결과에 대 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제20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 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26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 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개정 2011. 1. 10>
- ②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상대 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 1. 10>
- ④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 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

- 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 10>
- ⑤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등급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1. 10>
- 제21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농촌진홍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연차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연차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공동연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농촌 진흥청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20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1. 연차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 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⑤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 10>
- 제22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공동연구사업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를 당해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③ 농촌진홍청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 1. 제19조제3항의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
 -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 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정보의 통합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10>
- 제23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공동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② 공동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 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 3. 농촌진흥청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③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2.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4. 주관연구기관 등이 성과물 관리 전환을 요청한 경우
 - 5.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수 있다.
-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농촌진흥법」제14조의2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⑥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

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 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제2항 및 제4항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 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 ⑦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공동연구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 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관리에 있어 농촌 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개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보고서,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등을 서면제출과 동시에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 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평가 위원후보단을 구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1. 인적사항
 - 2. 전공
 - 3. 연구분야
 - 4. 논문실적
 - 5. 평가 이력 사항
 - 6. 그 밖에 평가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공동연구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등록·관리 실태를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0>
- ⑥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 를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0>
- 제25조(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 마련)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 발성과를 제13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13항에 따른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 또는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 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

- 계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 또는 기탁받는 기관은 연구성과의 유지 ·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동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연구 성과를 지식재산권 출원, 전문 학술지에 발표 및 게재 또는 언론기관에 홍보할 경우 농촌진흥청의 공동연구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별도의 운영지침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연구결과로써 제시된 유전자원(동물, 식물, 미생물 등), 유전자 및 유전정보 등의 연구성과물은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 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④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개발과제의 경우
 -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

- 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 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7조(연구개발기술의 실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려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이 하"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가 국가직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지방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 10>
-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 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영리법인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중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 이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법인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그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농촌

진흥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③ 기업참여과제로서 참여기업이외의 자에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주관 연구기관, 참여기업, 실시기업간의 협의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금액, 징수기간 등을 결정한다.
- ④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농촌진흥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생산과 정에 이용하여 당해제품의 매출액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협약내용의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연구개발비의 정부출연금액에 대하여 회수 조치토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은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⑦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기술료 감면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성과를 영농현장에 조기 확산하여 실용화를 도모하거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촉진 및 성장발전을 지원할 경우 또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와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과정 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1. 농업인 등 : 전액감면
 - 2. 중소기업 : 당해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금액의 70퍼센트 상당액을 감면 조정할 수 있다.
 - 3. 공공성, 수출입전략상 또는 기초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4. 국공립기관・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당해 기관 연구원이 기업화

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

-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⑧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분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주관연 구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⑨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 등의 세부 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11. 1. 10>
- ① 농촌진흥청장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제29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 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출 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 한 보상금
- ②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1. 정부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 이상: 농촌진흥청장에게 납부
 - 2. 정부출연금 지분의 35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이체하여야 한다.
- ④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 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결과와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의 연구원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상금
 - 2.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운영경비
 - 3.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 소속 직원 등으로서 기술확산 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4.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일 경우 보안설비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
-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제5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 ⑦ 농촌진흥청장은 제6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제30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농촌진흥청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 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 2. 연구수행관련 자료ㆍ정보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조치
- 5. 연구개발 내용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컴퓨터,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 조치
-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 과제 협약 시 별지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익년 1월 말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농촌진흥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 ⑥ 공동연구사업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 4 장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1조(사업대상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대상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국내기술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단독연구로 개발이 곤란한 농업과학기 술의 개발
- 2. 외국의 첨단농업과학기술 또는 유용농업자원의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 개발
- 3.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

제31의2조(국제공동연구사업의 추진)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 10>

제32조 삭제 <2011. 1. 10>

제33조 삭제 <2011. 1. 10>

제34조 삭제 <2011. 1. 10>

제35조 삭제 <2011. 1. 10>

제36조 삭제 <2011. 1. 10>

제37조 삭제 <2011. 1. 10>

제38조 삭제 <2011. 1. 10>

제39조 삭제 <2011. 1. 10>

제40조 삭제 <2011. 1. 10>

제 5 장 신품종개발공동연구사업

- 제41조(사업의 대상 및 구분) 신품종개발공동연구는 다음 각호의 시험을 대상으로 한다.
 - 1. 소속연구기관에서 육성한 계통의 지역적응시험 및 특성검정시험을 통한 신품종 육성시험
 - 2. 기존품종과 새로 육성된 품종 중에서 지역별로 가장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여 보급하기 위한 지역장려품종선발시험
 - 3. 벼, 보리 등 주요농작물의 생육 및 수량을 예측하고 연차간, 지역간 변이를 비교·평가하여 신품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황시험
 - 4. 우수한 국내 신품종의 재배확대와 소규모 작목의 국내 신품종 조기 정착을 위한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 **제42조(대상기관)** ① 신품종 육성시험과 작황시험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소속연구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 ② 지역장려품종선발시험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주

- 체가 되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 ③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소속연구기관 또는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수행한다.
- **제43조(대상작물)** ① 신품종 육성시험에 있어 지역적응시험과 특성검정시험의 대상작물은 소속연구기관에서 육성하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설 내에서 재배되는 채소, 화훼작물 등은 특성검정시험만을수행할 수도 있다.
- ② 지역장려품종선발시험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작황시험은 벼, 보리, 콩 등 주요농작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④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은 중앙 또는 지방연구기관에서 최근 5년 이내에 개발한 품종으로 한다. 단, 장기적인 재배기간이 필요한 과수 등의 작목은 최근 8년 이내에 개발한 품종으로 할 수 있다.
- 제43조의2(신품종개발공동연구사업의 추진) 신품종개발공동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 10>

제44조 삭제 <2011. 1. 10>

제45조 삭제 <2011. 1. 10>

제46조 삭제 <2011. 1. 10>

제47조 삭제 <2011. 1. 10>

제49조 삭제 <2011. 1. 10>

제50조 삭제 <2011. 1. 10>

제51조 삭제 <2011. 1. 10>

제 6 장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제52조(사업대상분야) 농업인기술개발사업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품목별 애로사항 해소 기술분야
- 2. 중앙단위 시험·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 영농현장의 기술 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분야
- 3.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완기술 개발과제분야
- 4. 농업용 기자재 개발, 특수농법 등 실용기술 개발과제 분야 등

제52조의2(농업인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농업인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 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 10>

제53조 삭제 <2011. 1. 10>

제54조 삭제 <2011. 1. 10>

제55조 삭제 <2011. 1. 10>

제56조 삭제 <2011. 1. 10>

제57조 삭제 <2011. 1. 10>

제58조 삭제 <2011. 1. 10>

제59조 삭제 <2011. 1. 10>

제60조 삭제 <2011. 1. 10>

제61조 삭제 <2011. 1. 10>

제62조 삭제 <2011. 1. 10>

제63조 삭제 <2011. 1. 10>

제 7 장 연구윤리 확보

제64조(연구윤리의 확보) 농촌진흥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장(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마련하여 제공한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농촌 진흥청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할 때에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5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① 연구기관의 장은 농촌진 흥청장과 연구윤리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윤리지침을 반영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그 검증을 하고 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
- ⑤ 농촌진흥청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66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 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 10>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해

- 외로 누설 · 유출한 경우 5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 4.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부터 5 년까지
 -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부터 3년까지
 -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 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 10>
- ④ 농촌진흥청장은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10>
-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0>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이의신청 제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 10>

제 8 장 보칙

제67조(세부규정의 제정·운영)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1. 공동연구사업의 세부사업 구분
-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3.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4. 기타 서식에 관한 사항
- **제68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야 한다.
-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
 -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을 포함한다)하려고 하거나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미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 10]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농촌진흥청 훈령 제818호(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는 폐지한다. 다만 기존에 수행 중인 공동연구과제는 기존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1월 1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발비 출연 기준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 담 기준 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경우: 부담금액의 15 원의 인건비(대기업의 50퍼센트 이내 경우에는 현물 투자 퍼센트 이상 액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대기업이 아닌 경 ·대기업이 아닌 경 중소기업 • 대기업이 우: 총연구개발비의 우: 부담금액의 13퍼 아닌 경우에는 70퍼 60퍼센트 이내 센트 이상 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 인 경우: 총연구개발 인 경우: 부담금액의 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비의 75퍼센트 이내 10퍼센트 이상 라. 참여기업이 2개 이상 시작품 제작에 필요 한 부품비(대기업이 이고, 이 중 중소기업 의 비율이 3분의 2 보유하고 있는 연구 이상인 경우: 총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는 개발비의 75퍼센트 기업의 현물 부담액 이내 중 인건비를 제외한 마. 그 밖의 경우: 총연 금액의 50퍼센트 이 구개발비의 50퍼센트 내, 중소기업 · 대기업 이 아닌 경우에는 70 이내 퍼센트 이내)

※ 비고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4조제5항 관련)

	세 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9	7		
인 건 비	내 부 인 건 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實支 給額)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인건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가능하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현물로 중복하여계상할 수 없다.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분야인 경우다.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원인 경우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 부 인 건 비	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	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 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 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연 구 장 비 ・ 재 료 비	1.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 1 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 이 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 외한다), 연구시설·장비의 설치 ·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시 험 분석료,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 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직 접 비	연구 활동 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연 구 ~	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전문가 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성대 등 1에 필요한 경비 책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성금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	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을 말하며, 대학의 경우만 계상 할 수 있다.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 상한다.
	수당	당 당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 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 제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 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 다.
간 접 비	간 접 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

해당하다)

급

2. 연구지원비

-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 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 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 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 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 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 다)
-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 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

-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 3.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 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 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 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 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 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 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 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 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 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 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 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 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 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 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 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 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 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 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 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 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 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 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 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 해 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 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 록 · 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 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 운영, 연구 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비고

- 1.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수급되는 내부인건비의 합계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 총액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 3.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없다.
- 5. 연구기관별로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지급해야 한다.